

# 2026년 전략작물산업화(가루쌀 교육·컨설팅) 사업

## I 사업 개요

### □ 목 적

- 고품질 가루쌀 생산을 위한 공동영농 및 공동경영체계 구축 지원

### □ 사업내용

- 가루쌀 재배기술, 공동영농 및 공동경영체계 확립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및 실태조사 등을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30ha 이상 가루쌀 공동영농을 할 수 있는 ①농협조직, ②농업법인, ③ 농업기술센터

\* ①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②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③ '25년 시범단지로 참여한 단지중 법인설립일이 1년 미만인 곳만 지원 가능('27년부터는 참여 불가)

### □ 예산

- 사업규모 : 140개소 내외, 4,200백만원(국비 2,100백만원)
- 지원기준 : 경영체 당 30백만원 내외(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 사업신청 : 소재지 시·군·구에 '25.11.21.까지 신청

### □ 선정절차

- 신청(~11.21) → 지자체 심사(~12월) → 지원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26.1월)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김수연 사무관 홍성욱 주무관	044-201-2917 044-201-2918
충남도청	스마트농업과	김진형 팀장 고승연 주무관	041-635-4032 041-635-4055

# 2026년 전략작물산업화(가루쌀 시설·장비) 사업

## I 사업 개요

### □ 목 적

- 고품질 가루쌀 생산을 위한 공동영농 및 공동경영체제 구축 지원

### □ 사업내용

- 가루쌀 재배기술, 공동영농 및 공동경영체제 확립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및 실태조사 등을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30ha 이상 가루쌀 공동영농을 할 수 있는 ①농협조직 또는 ②농업법인  
\* ①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②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 예산

- 사업규모 : 4개소 내외, 2,000백만원(국비 1,000백만원)
- 지원기준 : 경영체 당 500백만원 내외(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 사업신청 : 소재지 시·군·구에 '25.11.21.까지 신청

### □ 선정절차

- 신청(~11.21) → 지자체 심사(~12월) → 지원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26.1월)

###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김수연 사무관 홍성욱 주무관	044-201-2917 044-201-2918
충남도청	스마트농업과	김진형 팀장 고승연 주무관	041-635-4032 041-635-4055

##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1년(총 5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사업대상자)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기술센터('25년 시범단지로서 참여한 단지만 가능)
- 사업규모 : 교육·컨설팅 140개소, 시설·장비 4개소 \* 사업 신청량·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조건 : 보조(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교육·컨설팅) 30백만원 내외(면적과 인원에 따라 배정액 조정)
  - (시설·장비) 500백만원 내외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 2. 지원자격 및 제한

- (지원자격) 희망 재배면적이 30ha 이상\*인 ①농협조직, ②농업법인\*\*, ③농업기술센터
  - \* 재배농가, 재배필지 등을 '25.12.31.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 이후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 \*\* ①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②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③ '25년 시범단지로서 참여한 단지만 가능('27년부터는 참여 불가)
  - '24~'25년도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참여 법인(시범단지 포함) 과 농식품부 농업기반과에서 추천한 가루쌀 재배를 위해 선정된 간척지 단지만 지원 가능
  -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 필요(컨테이너 형태 사무실 인정)
  -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별표6)에 적합하여야 함
    - \* 지자체는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 여부,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총 출자지분 요건,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구비하였는지 확인
- (지원제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 신청 및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시설·장비는 사업 추진 중에는 추가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최종 사업종료(정산일 기준) 다음연도부터 5년간 지원 제한
- 최근 5년 이내에 전락작물산업화(두류 등) 전문 생산단지로 시설장비를 지원 받았거나,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의무면적 미달한 경영체는 지원 제한(단, 타작물 의무면적을 충족하고, 별도 작목반과 다른 들녘으로 경합관계가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 \* (예시1) ○○농협의 경우 논타작물 재배를 위한 콩 작목반이 의무면적을 충족했고, 가루쌀 작목반을 신규로 결정해서 콩 재배들녘이 아닌 다른 들녘에서 가루쌀 재배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신청 및 지원 가능
  - (예시2) ◇◇영농조합의 경우 논 타작물로 콩 단지를 조성 중(의무면적 미 달성)에 있거나, 의무면적은 달성하였으나 동일 들녘에서 가루쌀 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와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3. 지원내용

- (교육·컨설팅 지원)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 (시설·장비 지원) 공동영농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지원
  -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 여부는 사업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며, 과잉 보유 시설·장비(유사사업 지원 등)의 추가지원은 불가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 교육·컨설팅 지원

- \* 농식품부와 aT에서 인증받은 컨설팅 업체(컨설턴트)를 통해 사업을 수행, 사업비는 개별 사용이 불가하며, 인증 받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생산단지 단위로 통합·운용

- (교육비) 가루쌀 재배교육, 공동영농·농가조직화 교육, 계약재배 및 작부체계 전환, 농기계 조작·관리, GAP·친환경·저탄소 인증 취득 지원, 선진지 견학 등
  - \* 교육 참여 독려를 위해 기념품(교육당 참석인원 1인당 1만원 이내) 및 가루쌀로 만든 가공식품 제공 가능(참여농가 1인당 연간 3만원 이내)
  - \* 컨설팅 업체는 교육 계획 수립 시 지자체 담당자 및 생산단지 대표 의견 반영(서명 得)
- (재배매뉴얼 교육) 2회(이앙기 및 수확기 이전 실시)
  - \* 농식품부 교육 강의자료 활용, 가루쌀 이외 품목 교육 금지
- (농가·조직화 교육) 1회
- (선진지 견학) 2회(우수 생산단지 견학 1회, 기타\* 1회)
  - \* 가루쌀 관련 식품·가공·제분 기업, 기타 농업 관련 전시·박람회 등
- (가공 우수사례) 1회(전략작물을 활용하여 가공·식품제품 및 제과·제빵 개발 우수사례)
- (기타 교육) : 1회(계약재배 및 작부체계 전환, 농기계 조작 관리 등)
  - \* 기타 교육은 가루쌀 외 농업 관련 다른 교육도 가능
- (컨설팅비) 공동영농·농가조직화 운영체계 수립, 재배 현장관리, 생산단지 사업 수행 및 참여 지원(참여 사업 안내, 서류 작성 지원 등)
  - (공동영농 규약 수립·관리) 공동영농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必), 생산단지 규약 마련·수정, '26년 가루쌀 생산단지 운영계획 마련(必)
  - (사업안내) 가루쌀 교육·컨설팅 사업 시행 내용 및 차년도 사업 모집 안내\*
    - \* 교육·컨설팅·전략작물직불금 등 가루쌀 관련 주요 사업 내용 및 신청시기, 의무사항 등
  - (재배관리) 주요 작기(육묘, 이앙, 출수, 수확) 생산단지 현장점검 및 재배매뉴얼 교육
    - \* '26년 농식품부 교육 강의자료를 활용하여 진행, 교육 횟수는 최대 4회(현지 사정에 조정)
  - (비상연락망 구축) 책임 컨설턴트 주도하에 생산단지별 SNS 운영
    - \* 질의사항 응답, 사업 관련 주요 공지사항 전달 등
  - (사업보조) 사업 결과보고서, 차년도 사업 신청서, 기타 공동영농 활성화 및 가루쌀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서류 작업 보조

- (조사비) 생산단지 현황 및 재배농가·재배필지 조사·보고, 주요 작기별 생육상황 점검 및 조사·보고, 재해 발생 시 피해 현황 조사·보고
- (생산단지) 가루쌀 생산단지 관리시스템에(아그릭스) 생산단지 현황 정보 입력
- (재배농가) 가루쌀 생산단지 관리시스템에(아그릭스) 재배농가 정보 입력
- (재배필지) 가루쌀 생산단지 관리시스템에(아그릭스) 농가별 재배필지 정보 입력, 입력된 필지는 농가별 확인서 서명을 받아 농식품부 제출(~7월말)
- (지도제작) 재배필지 정보가 입력된 지도 제작(팜맵 활용)해서 지자체 담당자와 생산단지 대표(관리자)에게 제출(~7월말) \* 지도 재질 및 크기는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
- (생육상황 점검) 생산단지 주요 작기 재배현황 조사 및 보고서 작성(결과보고서 반영)
- (시료채취) 농식품부가 지정한 단지는 9월초~중순 필지별 샘플 시료 채취 후 제출

## 나. 시설·장비 지원

-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여 가루쌀 재배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가루쌀 영농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실외 공동육묘장(구조물 제외), 가루쌀 전용 콤바인, 가루쌀 전용 건조기 등 우선 지원
- \* 공동육묘장의 경우 전락작물산업화 육성 지원 사업의 사업다각화 지원 기준 준용
- \* 동계 작물(밀·보리·조사료 등)과의 연계 등 경영체의 작부체계 특성에 따라 동계작물 파종기·수확기(조사료(건초) 수확장비 등) 등 제한적으로 일부 포함 가능

## 5. 의무부과 및 주의사항

### 가. 의무부과

- 가루쌀 재배 매뉴얼 준수, 단지별로 공동 육묘 추진
- 가루쌀을 재배하는 모든 필지는 농작물재해보험 의무 가입(7월말 점검)
- \* '25년도 가루쌀 참여 농가중 농작물재해보험 미가입 농가는 '26년도 사업 참여 배제
- 국립종자원에서 보급한 종자 사용('25년은 작황 부진으로 제외, '26년 적용)
- 매년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자 선정결과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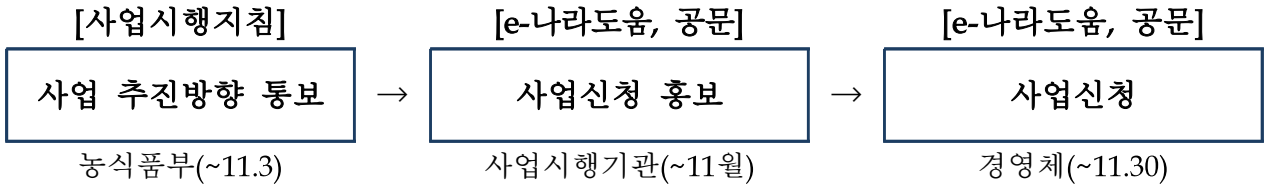
## 나. 주의사항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및 자부담 비율을 변경 시 반드시 농식품부의 승인 필요(보조금법 제23조)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최소 30% 이상 편성, 미 이행시 사업 선정 배제 가능

## 6. 사업특례

- 교육·컨설팅을 1년 이상 이수하고 사업자 선정 평가 결과가 상위 20%인 사업자는 교육·컨설팅 참여 없이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로 참여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도 재배 매뉴얼 준수, 공동 육묘 추진 등 재배와 관련한 사업상 의무를 이행해야 함
- '25년 시범단지 중 법인 설립기간이 1년미만인 생산단지는 농업기술센터 명의로 사업 참여 가능('26년 한시 적용)
- '26년 사업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25년 전문 생산단지를 담당할 컨설턴트가 주관하여 생산단지 대표(책임자)와 작성('25년 컨설턴트 사업자 의무)
  - \*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서류 작성 시 컨설턴트가 사업비 외 별도 비용을 생산단지에 요구할 경우 해당 업체 인증 자격 박탈 및 해당 컨설턴트 사업 참여 5년간 배제 조치 예정
  - \*\* 시범단지 등 컨설턴트가 없는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주관하여 생산단지 대표와 작성
- 농업기반과에서 추천한 간척지 단지는 평가 없음(농업기반과와 농어촌공사에서 별도 선정)
  - \* 단 사업 관리를 위해 신청서류는 제출해야 함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별 세부지원 내용 및 사업신청 요령, 평가절차·기준 등을 포함한 다음연도 사업지침 수립 시달(11.3까지)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사업시행기관(지자체)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방법,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공고(~11.7까지)
  - \* 시·군은 e나라도움 상에 공모내역등록(세부추진계획·예산집행계획 필수입력 여부 설정을 “N” 처리, 별도 신청서 등 제출)하고, 신청인은 e나라도움으로 사업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과 별도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신청서등 제출서류 준비를 자세히 안내

사업자(신청업체)

- 다음연도 가루쌀 생산단지조성 사업 신청 경영체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및 e나라도움, 아그릭스를 활용하여 신청(~11.30)
  - 참여농가와 농가별 재배필지는 '25.12.31까지 아그릭스를 통해 입력(입력 면적은 '25년도 재배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 아그릭스 시스템 입력 전 가루쌀 재배 참여농가의 농업경영체 정보 현행화 필요
    -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와 미등록 필지는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사업 참여 불가하며 사업 참여를 위해 '25년 12월까지 경영체 등록 완료 필요
    - \* 농업기반과 추천 간척지의 경우 '26년 1월말까지 경영체 등록 완료 필요

## 지자체(시·군)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추었고,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한 사업자에 한해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도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대상 등을 통해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규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법인 등
-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자부담 확보 가능 여부, 사업기간 내 집행 가능성(사업추진일정) 등에 대해 철저 확인

## 지자체(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자의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와 제출서류의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로 제출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위원회에서는 정량평가 최종 확인, 정성평가 및 시설·장비 사업비 심의

## 2. 사업자 선정단계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별표6)에 적합한지 확인

### < 농업법인 지원요건 별표6 중 공통 지원요건 >

-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하여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략

5. 생략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 지자체는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과 관련된 제출서류 등 검토

- (기본자격) 희망 재배면적이 30ha 이상인 ①농협조직, ②농업법인, ③농업기술센터

\* ①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②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③ '25년 시범단지로 참여한 단지만 가능('27년부터는 참여 불가)

- (검토내용) ① 총 출자금 5천만원 이상, ②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단서 조항에 해당할 경우 단서 조항 적용), ③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 지자체는 사업지원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6(농업법인 지원 요건) 제1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제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 후 농식품부 제출

\*\* 재배면적은 농식품부 정량평가에서 확인

- (조치사항) 지원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구비서류 누락, 지원 제외대상·거짓 및 허위 신청,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평가 제외

\* 단순 누락으로 평가 전까지 보완 가능한 경우는 평가에 포함 가능

## <2단계 : 정량평가>

- 평가방법 : 평가지표에 따른 서면평가(정량) 실시(~'26.1.), 아그릭스 등 시스템 자료와 제출 서류 확인
- 평가항목

지표내용		배점	자료 출처
①	희망 재배면적	-	사업 대상자 제출(시스템 입력)
②	희망 참여인원	-	사업 대상자 제출(시스템 입력)
③	집적화(필지 밀집도)	20	사업 대상자 제출(팜맵 활용)
④	생산성(단위면적 당 생산량 측정)	20	농식품부 시스템 자료
⑤	조직화1 - 과거 사업 참여 면적	40	농식품부 시스템 자료
⑥	조직화2 - 회원 평균 사업 참여 기간	10	농식품부 시스템 자료
⑦	조직화3 - 가루쌀 재배 경험 농가 비율	10	농식품부 시스템 자료
<b>계</b>		<b>100</b>	
가-감점	⑧ 밀 전문생산단지 동시 참여	가점3	농식품부 시스템 자료
	⑨ 사업설명회 참여 여부	가점3	'25년 4월 사업설명회 참석명부
	⑩ 정부포상·장관표창 수상자	가점3	사업 대상자 제출
	⑪ 전략작물 직불금 조기 신청 실적	가점3	농식품부 시스템 자료
	⑫ 참여면적 2개 시군 이상 포함	감점10	농식품부 시스템 자료
	⑬ 과거 배정 면적 대비 이행 실적	감점5	농식품부 시스템 자료
	⑭ 사업비 미정산	감점5	농식품부 시스템 자료

\* '26년 기준으로 평가하는 항목(집적화, 가루쌀 재배 경험 농가 비율)은 '26년 실제 이행이 계획 대비 10% 이상 변경될 경우 '27년 평가 시 감점(최대 - 30점) 예정

### ①~② (희망 재배면적·참여인원) 12월31일까지 아그릭스 시스템을 통해 입력

\* 희망 재배면적이 30ha 미만인 경우 평가 제외, 12월31일까지 경영체 미등록 필지는 제출 불가

### ③ (집적화) 생산단지 중심지로부터 '26년 필지 분포 비율 평가(중심지 복수 지정 가능\*)

- (점수배점) 반경 5km 이내 분포 20점, 반경 10km 이내 분포 10점, 반경 이내 15km 0점, 15km 초과 분포한 면적은 동일한 전문 생산단지로 사업 참여 불가

\* 중심지 복수 설정 가능 기준: 반경 5km 이내 15ha 이상 분포 시 가능

### ④ (생산성) '25년 생산단지 농관원 가루쌀 수매량/생산단지 가루쌀 재배면적

- (점수배점) 생산단수 기준 상대평가 실시(상위 0~20%이상 20점, 20%미만~40%이상 15점, 40%미만~60%이상 10점, 60%미만~80%이상 5점, 80%미만 0점)

### ⑤ (참여면적) '23~25년도 사업 참여 평균 재배면적 평가

\* '23~24년은 전략작물직불시스템 데이터, '25년은 가루쌀 생산단지 관리시스템 데이터 활용

- (점수배점) 100ha이상 40점, 75이상~100ha미만 30점, 50이상~75ha미만 20점, 30 이상~50ha미만 10점, 30ha 미만 0점

⑥ (회원 평균 사업 참여 기간) 생산단지 구성원이 해당 단지에서 '23~25년 가루쌀을 재배한 평균 재배기간을 평가(중간에 단지를 이동할 경우 초기화\*)

\* ex) '23년 A 단지 재배한 농가가 '24년~'25년 B단지에서 재배한 경우 재배기간은 2년

- (점수배점) 평균 재배기간 기준 상대평가 실시(상위 0~20%이상 10점, 20%미만~40% 이상 7.5점, 40%미만~60%이상 5점, 60%미만~80%이상 2.5점, 80%미만 0점)

⑦ (가루쌀 재배 경험 참여 농가 비율) 가루쌀 재배 경험이 있는 농가 참여 비율

- (점수배점) '26년 사업 신청 농가 중 가루쌀 재배 경험 참여 농가 비율(80% 이상 10점, 70이상~80미만 5점, 70% 미만 0점)

⑧ (밀 생산단지 동시 참여) '25년 밀 전문생산단지 동시 참여 여부

- (점수배점) 동시 참여 시 5점 가점

⑨ (사업설명회 참여) '25년 4월말 사업설명회 참여 여부

- (점수배점) 1인 이상 참여 시 3점 가점

⑩ (수상실적) 최근 10년 이내('16년 이후) 정부포상 및 농식품부 장관표창 수상자

- (점수배점) 정부포상 수상자(국무총리 이상) 포함 시 가점 3점, 농식품부 장관표창 수상자 포함시 1인당 1점 최대 3점까지 인정

⑪ (전략작물 직불금 조기 신청 실적) '25년 가루쌀 전략작물 직불금 생산단지별 최종 신청 실적 대비 '25년 4월말 기준 신청률 평가

- (점수배점) 97% 이상 3점 가점, 96% 이상 ~ 97% 미만 2점 가점, 95%이상 ~ 96% 미만 1점 가점

⑫ (참여면적 2개 이상 시군) '25년 재배면적이 2개 이상 시군에 동시 포함된 경우

- (점수배점) 재배면적이 2개 이상 시군 포함 시 1점 감점, 3개 이상 포함 시 3점 감점, 4개 이상 포함 시 10점 감점

⑬ (과거 배정 면적 대비 이행 실적) 배정 면적 이행 실적 평가

- (점수배점) '25년 당초 배정면적 계획 대비 80% 미만 이행 재배 5점 감점, 당초 배정 면적 계획 대비 1.5ha를 초과하여 재배 시 5점 감점

⑭ (사업비 미정산) '24년 교육·컨설팅 사업비를 '25년 3월까지 미정산한 경우

- (점수배점) '25년 3월말 이후 정산 감점 3점, '25년 11월까지 미정산 감점 5점

### < 3단계 : 최종평가(2단계 검증 등) 및 면적배정 >

- (최종평가) 선정위원회가 2단계 평가 검증 및 정성평가(시설장비만 해당, 지자체 자체 지원 등 정성평가) 후 최종 평가 결과 확정
    - (선정위원회 구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0조에 따라 선정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2단계 평가 결과 검증 및 최종평가 실시
    - (지자체 자체 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8조 제1호~제3호, 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획서 평가(0~5점 점수 부여)
    - (최종평가) 정량평가 + 정성평가
  - 평가결과와 전년도 실 재배면적을 반영하여 차년도 재배면적 부여
    - (평가결과 상위 10% 이상 단지) 전년도 재배면적 대비 최대 15% 확대 가능
    - (평가결과 상위 10미만~30%이상 단지) 전년도 재배면적 대비 최대 5% 확대 가능
    - (평가결과 상위 30~70% 단지) 전년도 재배면적 배정 5% 감축 배정
    - (평가결과 상위 70~90% 단지) 전년도 재배면적 대비 10% 감축 배정
    - (평가결과 상위 90~100% 단지) 전년도 재배면적 대비 20% 감축 배정
    - (시범단지)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최대 35ha 배정
- \* '26년도 가루쌀 재배면적은 8천ha(채종포, 간척지 포함)

### <시설장비 : 시설장비 지원자 중 정량평가 상위 1.5배 내외 대상 발표평가 실시 >

- 시설·장비 지원 단지 중 1.5배수 내외를 정량평가 순으로 1차 선정
- 1차 선정된 단지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실시
  - 발표평가는 지원 요구한 시설·장비의 필요성과 단지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 활용 계획서 등 2가지 요소만 평가
- 정량평가 70% + 정성평가 30%로 최종 사업자 선정(예비 단지 2개)
- 시설·장비 선정 업체 대상으로 사업규모와 시설투자의 적정성 등을 최종 사업자 선정 후 세부사업비 심의 실시
- 시설·장비를 지원 받은 사업자는 '26년 기준으로 평가하는 항목(집적화, 가루쌀 재배 경험 농가 비율)의 수치가 10% 이상 변경될 경우 사업자 선정 취소 및 예비 사업자로 인계('26년 6월말 기준 수치 확인)

### 3. 사업대상자 결과 발표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26.1.)

- \* 교육·컨설팅을 2년 이상 이수하고 평가 결과가 상위 20%인 생산단지는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없이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지정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

○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에 다음연도 보조금(안) 가내시 통보(~9.15.)

- \* 재정집행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별도의 사업준비 상황을 점검 실시

○ 사업대상 시·도에 사업대상자,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26.1.)

- \* '24년도 예산 확정이 지연될 경우 절차가 순연될 수 있음

#### 지자체(시·도)

○ 사업신청 시·군에 다음연도 보조금(안) 통보(가내시)(~9.30)

○ 사업대상 시·군에 사업대상자,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26.2.10)

#### 지자체(시·군)

○ 사업대상자에게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26.2.20)

- e나라도움에 선정결과를 등록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지(~'26.2.28)

### 4.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 《세부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26.3.31)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군 보고

- 사업계획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등 : 시·군의 승인 후 시행

- \* 세부시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 시에는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검토 후 조정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농식품부 심의·승인)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평가단계 사실관계 오류, 단순 변심 등은 사업비 변경 대상이 아님
-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조정 건의 승인 요청은 총 사업비(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되는 금액의 합계가 총 사업비(예산)의 30% 이하는 시·군 승인, 30% 초과부터 50% 이하는 시·도 승인, 50% 초과 시는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시행
- 참여 농가 및 재배면적 조정은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시·군은 사업자가 수립한 세부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 또는 변경하도록 조치하고, 세부시행계획서를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26.4.15)
- 시·도는 관할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시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농식품부에 제출(~'26.4.30)
- 세부시행계획 변경 등 계획변경 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
  - 사업계획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 시·군 승인
  -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 조정 비율에 따라 해당 주체 승인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5.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26.1.31.)
  - 사전준비상황(입찰준비 및 일상감사,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등)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 및 지자체는 제외,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시·도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시 보조금 배정(수시)

## 지자체(시·도)

-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26.2.10)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26.2.20)
- 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시 보조금 배정(수시)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시 반드시 사업자별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자체(시·군)

- 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 안내 및 교부결정 통지(~'26.2.25)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부결정 조건 이외에도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 교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에게 교부결정 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
  - 기본규정 제56조에 따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26.2.28)
- 사업비(국고+지방비)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 후 사업시행 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 준수 여부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 적극행정을 통한 집행을 제고 및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등을 위하여 선금지급 활성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 \* 교육·컨설팅지원은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선금 50%를 의무적으로 지급

《 선금 지급 활성화기준 》

○ 제도개요

-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억 원 미만 20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b>계약금액의 50%</b>	<b>20억 원 미만</b>	<b>3억 원 미만</b>	

※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지급 요령

○ 조치사항

- 선금지급 확대 :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 다만, 계약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밀어내기식의 선금집행은 지양

- 선금지급 기간 단축 : 14일 이내 → 3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39호, '18.7.9) 제6장 선금·대가지급 요령. 제2절 선금의 지급. 2. 선금 지급대상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나,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가능함

⇒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에 조기집행 목적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해당 됨(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330(2016.3.23.))

○ 보조금 집행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5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6장 집행관리 등에 따라 시행, 집행

- 보조금 사용방식은 e나라도움을 활용하며, 전용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정함

\* 세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확인·집행

○ 연말까지 미 집행한 국고 보조금 예산은 이월 집행 금지

\* 다만, 불가피하게 이월 집행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실시

○ 시장·군수 및 사업대상자는 사업의 수행·정산 등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업 완료 후 5년간 보관 의무를 지님

## 사업자

-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26.3.10)
- 자금 집행금액에 대한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구비하여 e나라도움에 등록 후 집행하며,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를 e나라도움 및 문서로 시·군에 제출
- 사업대상자는 가루쌀 재배 매뉴얼 준수 및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비치해야함
- 재배관리는 컨설팅업체(민간전문위원 등) 및 현장기술지원단을 통해 공동 육묘·이앙·시비·방제·수확 시기에 집중 관리하고, 그 외에는 수시 관리
  - \* 현장 밀착형 기술지도를 위해 농진청 및 기술원·기술센터 소속 벼재배 관련 전문가로 구성
- 가루쌀 생산단지에 참여하는 모든 필지는 농작물재해보험 의무 가입
- 종자는 국립종자원에서 보증한 종자만 사용(자가채종종자 사용 금지)
- 매년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에 반영
- 생산단지 경영체는 컨설턴트를 통해 생산단지별 주요 사항을 시·군에 제출
  - 시군 및 시도는 재배 주요 시기별 조사 사항 등 사업결과보고를 농식품부에 제출

## 6. 이행점검 및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단계

### 《사업추진 등 이행점검》

- 농식품부는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의 적절성, 컨설팅업체 모니터링 등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등 사업관리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6~7월, 8~9월)
  - 점검반 : 농식품부(주관), 농촌진흥청, 시·도, aT, 농어촌공사 등 합동 현지방문 점검 등

## 《사업비 정산》

### 사업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0일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기본규정 제62조)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다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
    - \* 보조금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2조의2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 비예탁 처리 시, e나라도움 등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를 별도 반납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사업기간은 교부결정 등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연도 1월 1일부터 적용

###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될 때 사업검정 실시 및 사업비를 정산하고 익년 1월 20일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확인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특히 정산시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을 확정하며,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후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통보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와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 조치
- 시장·군수는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23~'26년 가루쌀 시설장비 지원사업 해당)

- 사업대상자는 중요재산을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사후관리기간 종료 이전까지 변동사항이 발생 시 매년 6월 15일, 12월 15일까지 변동현황을 제출해야 함

\* (중요재산)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재산처분의 제한 및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 그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현황이 공시되어야 함.

\*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6조) 보조금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기준
	부터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li> <li>* (육묘장, 저장고, 창고 등)</li> </ul>	준공일부터	10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li> <li>◦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보조금법 제3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8호)</li> <li>* 재산처분 기준 : 기본규정 제77조제2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의 종물</li> <li>(건물 내 기계설비 등)</li> </ul>	준공일부터	7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인항공방제기</li> </ul>	구입일부터	6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기계·장비</li> <li>* 광역방제기, 콤팩트, 트랙터, 차량 등</li> </ul>	구입일부터	5년간	

○ 모든 시설·장비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附記登記)를 완료해야 함

\* 특히, 특정인의 사유화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설비 등은 중점 관리 필요

《 부기등기의 내용 》

이 부동산(건물)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0000년 00월 0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 사업대상자는 기본규정 제72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해서 농림축산  
식품사업안내문 비치 등 시·군의 관리책임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
- 시장·군수는 기본규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일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점검항목 : 세부사업계획 이행, 자금집행 및 중요재산 관리의 적정성 등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의 용도의 사용,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처분 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부도·폐휴업·사업포기·사망 또는 1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보조사업의 수행배재(최대 5년간)와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등이 부과·징수됨

\* 보조금법 제30조부터 제33조의3, 기본규정 제78조부터 제88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3931호, '16.1.28) 이후, 보조금 법령  
위반에 대한 명단 등의 공포 및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조금법  
제36조의2, 제40조 내지 제43조를 참조

### 1.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성과가 우수한 사업자는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여 차년도 재배면적 추가 부여와 공동영농작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추가 신청 자격 부여 등

### 2. 2026년 사업신청 등 공지사항

- 2026년 사업 신청 세부사항은 공고('25.11월)를 참조

### 3. 붙임 파일 및 서식

- <붙임 1> 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 <붙임 2> 시설·장비 지원 우선순위 선정 기준(발표평가)
- [별지 제1호 서식]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사업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경영체 일반 현황
- [별지 제3호 서식]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집적도 평가 기초자료
- [별지 제4호 서식] 가루쌀 시설·장비 활용 사업계획서(시설·장비 지원 단지만 제출)

< 붙임 1 >

○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항목	세부내용	예	아니오
1. 사업신청서	1.1 사업신청서		
	1.2 법인 현황		
2. 사업계획서	2. 시설장비 활용 사업계획서(시설장비 지원 생산단지만 작성)		
3. 법인 기본현황 (3)	3.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3.2.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협 제외)		
	3.3. 납세증명서(국제완납증명)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 법인 재무현황 (2)	4.1.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4.2. 법인출자자별 출자금 현황(현금, 현물), 법인자산(시설장비, 부동산 등) (증빙 사진) (농협은 사업관련 시설·장비 목록자료만 제시)		
5. 평가서류(4)	5.1. 희망 재배면적·참여인원 조사(12월 31일까지 아그릭스 시스템 입력)		
	5.2. 집적화 관련 서류(팜맵 지도 캡처)		
	5.3.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사본(해당 있는 경우 제출)		
	5.4. 지자체 자체 지원 등(시설장비 지원 <b>기초 지자체</b> 중 해당 내용 있는 경우 제출)		

< 붙임 2 >

○ 시설·장비 지원 우선순위 선정 기준(발표평가)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지원 장비의 공동 활용계획 (10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시설·장비의 조합원·참여농가 활용 계획</li> <li>- 조합원 외 단수 참여농가의 장비 활용도 평가</li> <li>- 장비 사용 인원, 재배면적, 사용 기간 등 평가</li> </ul>
2. 참여 농가의 공동 장비 활용 계획 동의여부 (10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농가의 공동 장비 활용 계획 동의율</li> <li>- '26년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참여 농가의 공동 장비 구매 계획 동의율을 발표평가 1주일전까지 제출</li> </ul>
3. 지자체 자체 지원 등(5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자체 지원 등(지자체 제출)</li> <li>-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8조 제1호~제2호, 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획서 평가 중 가루쌀 내용 포함 여부</li> <li>* 각 항목 가루쌀 지원 내용 포함 시 항목당 5점 부여 총 10점 만점</li> <li>1. 지방자치단체 등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에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포함 여부</li> <li>2.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농업경영체 유형별·발전단계별 지원방향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요 육성품목(주산지)에 해당되는지 가루쌀이 포함되는지 여부(1개만 해당, 중복 불가)</li> <li>가. 농업경영체 유형별 지원방향 : 전업농(첨단·수출 등), 중소농(6차 산업화, 규모화·공동생산 등), 영세·고령농(소득안정, 복지 등)</li> <li>나. 농업경영체 발전단계별 지원방향 : 초기단계(교육·훈련, 기초 시설·장비의 보조지원 등), 성장단계(규모화를 위한 융자·보조지원 등), 기업화 단계(첨단·수출농업 등 농산업 전문 기업화를 위한 융자지원 등)</li> <li>다. 주산지 여부 : 사업을 신청한 지원 대상 품목(분야)이 당해 시군구의 주요 육성 대상(주산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li> <li>5. 지방자치단체 등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의 자체 지원계획에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포함 여부</li> </ul>



(뒷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목적	보유·이용기간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가루쌀 재배필지, 농업경영체등록번호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 사업 예산집행, 교육·홍보, 사업 대상자 선정,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의무이행)	<b>준영구</b> <b>(농림축산식품부사업 보조·용자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b>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 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 사업 예산집행, 교육·홍보, 사업 대상자 선정,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의무이행),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가입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가루쌀 재배필지, 농업경영체등록번호	<b>준영구</b> <b>(농림축산식품부사업 보조·용자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b>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 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법인(농협) 일반현황

법인(농협)명		대표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법인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출자금액(천원)		출자자수(명)	
사업담당자	(성명)	(hp)	(e-mail)

법인 출자현황

출자자(성명)	출자금액(천원)			
	계	현금(천원)	현물(천원)	현물출자내역
기 타				
합 계				-

\* 농협 : 신청일 기준 조합원수 및 총출자액만 기재 (별도양식을 만들어서 작성하고 위 양식은 식제)  
 \* 출자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상위10명 기재, 나머지 출자자는 기타로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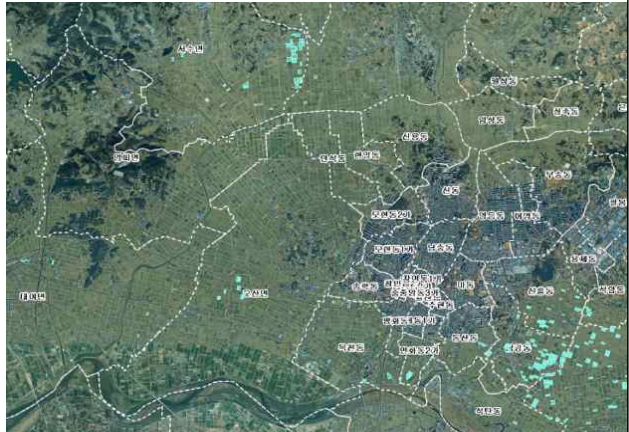
## [별지 제3호 서식]

### □ '26년 가루쌀 재배필지 분포현황

구분	중심지 지번	분포 범위(예시)	비고
1번 중심필지		반경 5km 이내	
2번 중심필지		반경 10km 이내	
3번 중심필지		반경 10km 이내	

\* 중심지 복수 설정 가능 기준: 반경 5km 이내 15ha 이상 분포 시 중심지 설정 가능

### ○ 가루쌀 재배필지 분포 지도(팜맵 활용)

	
<p>해남 A단지(재배면적 460ha, 필지 391개) 가로 1.5km, 세로 3km 이내 분포</p>	<p>익산 B단지(면적 100ha, 가로 12~13km, 필지 272개, 세로 10km 내외 분포)</p>

- 익산 B단지의 경우 춘포면에 중심지1번, 금암리에 중심지2번 설정 시 춘포면 중심지 분포 반경 10km 이내, 금암리 중심지 분포 반경 10km 이내 설정 가능)

[별지 제4호 서식]

---

# 2026년 가루쌀 시설·장비 활용 사업계획서

---

수립 2000년 00월 00일

0000법인

□ '26년 시설·장비 도입 추진계획

○ 도입 시설·장비 세부내역

시설·장비명	공급(제작)업체명	성능 규격	처리능력 (ha)/8시간	도입금액(천원) (세부 내역 및 금액)	비고
콤바인(1)					
	최저가격	-	-		
콤바인(2)					
	최저가격	-	-		
	최저가격	-	-		
<b>합 계(최저가격의 합계)</b>					

- \*공동영농 시설·장비 도입계획과 연계해야함
- \*동일 장비에 대해서 3개 업체이상 모델 제시(동일 장비를 복수로 도입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서 기재)
- \*성능규격 : 해당 장비에 기재된 성능규격(마력 hp 등)
- \*최저가격 : 3개 업체 가격 중 최저가격 기재
- \*견적서(첨부) : 공급업체 견적서에 성능규격, 처리능력, 세부 금액 등 필수 기재

○ 자부담금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이사회 의결서(서명 및 직인) 및 출자협약서(협약 참여자 서명) 등 제출

○ 자부담금 확보 계획

(단위 : 천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기 확보	계획
합 계		합 계		
○ 부지매입		○ 자부담		
		- 출자액(자본금)		
○ 부지조성공사		- 이익잉여금		
		- 신규출자		
○ 설치사업비		- 기타		
		○ 보조금		

○ 자부담 확보 추진 현황

-

○ 자부담 확보 향후 추진 계획

-

○ 사업 부지 확보 현황(토지가 필요한 실외 육묘장 등 해당사항 있는 경우 제출)

- 부지 확보 여부 : 확보완료, 확보 중(가등기)

\* 부지 확보 증빙자료 첨부

- 부지면적 :    m<sup>2</sup>(        평)

- 위치(주소) :

- 부지의 특성 : 물류, 교통, 제약요인, 강점, 기존시설, 주변시설 등 부지의 특성 세부 분석

-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드론 활용 전경사진)

- 사업부지의 규제검토결과 \* 건폐율, 용적율, 제한사항(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검토항목	규제사항 검토결과	비고
검토기관/ 기간		
용도지역		
농지(산지)		
도로하천		
환경·문화재		
자연재해		
기타		

구매 예정인 장비의 공동 활용 계획

○ (장비1)

- (사용능가 수/활용 면적/사용일정)

○ (장비2)

- (사용능가 수/활용 면적/사용일정)

○ (장비3)

- (사용능가 수/활용 면적/사용일정)

○ (장비4)

- (사용능가 수/활용 면적/사용일정)

○ (장비5)

- (사용능가 수/활용 면적/사용일정)

□ 구매 예정인 장비의 참여 농가 동의를

- \* '26년 시설·장비 도입 추진계획과 공동 활용 계획서를 열람 후 동의 여부 서명 제출
- \* 가루쌀 생산단지 시스템에 있는 사람의 전수 명단을 아래 표에 기입(누락 시 감점)
- \* 구매 예정인 장비의 활용 계획서를 열람하지 않고 동의를 받거나 서명, 동의 여부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감점 및 허위 정도에 따라 최종 사업자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연번	성명	핸드폰 전화번호	재배면적(ha)	동의여부(o/x)	서명
1	000	010-0000-0000			
2	000				
3	000				
4	000				
5	000				
6	000				
7	000				
8	000				
9	000				
10	000				
11	000				
12	000				
13	000				
14	000				
15	000				
계				O: 00명 X: 00명	